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2. 9  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자연재해 대책법」이 일부 개정, 시행(2005.1.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)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### 나. 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
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위험요인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

### 다.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- ▷ 필요시 추가 위촉
-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
- 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·위촉

### 라.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
-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,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해 연임가능
-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

**마. 위원회 운영(안 제6조)**

위원회 회의는 위원장,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소집

**바. 검토의견서 제출(안 제7조)**

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

**사. 현지조사(안 제8조)**

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5. 11. 10 ~ 11. 30(20일간) 별도의견없음

마. 기 타 : 표준조례안 시달(시 방재과-7894, 2005.10.6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4.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재난안전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방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소관담당이 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 등)**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2. 위원이 특정인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한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4.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 
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,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대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 
 ③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검토의견서 제출)**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, 별지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현지조사)**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 
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협의의견 반영)**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의무)**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,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의록)**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회·폐회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검토사항
4. 토의진행사항
5. 위원발언 내용
6.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○○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

1. 총괄의견

2. 세부검토의견

3. 기타의견

상기와 같이 ○○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검토자 : ○ ○ ○ 위원(서명 또는 날인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